## 정관변경사유서

[제정.개정이유]

「일부개정」

- 1. 개정, 주요골자
  - 1) 관련: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-2890(2022-03-30)

사립대학정책과-3377(2022-04-12)

의거하여「사립학교법」에 부패방지를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 정관에 반영하여 제·개정하기로 한다.

- 2) 또한「사립학교법」개정에 의해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 정관 '제12조의2,3', '제13조', '제17조의1', '제18조', '제25조', '제27조의1,2', '제77조의3', '제82조' 등을 개정 및 신설 하여 이 법인의 정관에 반영, 제·개정하였다.
- 3) 관련: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-1485(2022-02-15) 의거하여 제77조의3(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) '기금' 중복 단어 와 부칙 제2조(개정사항) 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다.